

## 임원직무청렴계약서

강원대학교병원 감사 김용식은 임원의 직무청렴의무를  
준수하며 병원의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을 확인하고, 강원대학교병원 이사  
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함.

2015년 6월 18일

강원대학교병원  
이 사 장 신승호

신승호

강원대학교병원  
감 사 김용식

김용식

# 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제정 2007. 09. 01. (규정 제1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병원의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계약자)** 직무청렴계약의 대상은 상임임원으로서 병원장과 감사로 하며, 강원대학교병원이사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방법)** 경영성과계약 시 직무청렴계약내용을 포함하여 계약하거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시기 및 기간)** ① 직무청렴계약의 계약기간은 대상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해임 또는 퇴직일까지로 한다.

② 직무청렴계약은 대상자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금지행위)** 대상자는 직무와 관련되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2.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3.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4.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6. 직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하는 행위
7.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개입 등 공정선거를 위해하는 행위
8.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기관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9. 기타 직무와 관련되어 법령 및 본원규정 등에 금지된 사항

**제6조(위반심의)** ① 이사회는 청렴의무 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다음의 각호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 청렴의무 위반혐의 내용이 해당기관의 임원으로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2. 위반혐의 내용이 청렴계약상의 직무청렴의무 금지행위
3. 기타 위반혐의 내용과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② 직무청렴위반 관련 일정 형량 이상의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 하여야 한다.

③ 혐의 임원, 관련자 등에 대하여 반드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경제적 제재 의결 시 다음 각호의 1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급유보 및 취소 : 유보(취소)사유, 대상금액, 해제요건 등

2. 환수 : 환수금, 환수고지, 환수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

제7조(청렴의무위반시 제재) ①청렴의무 위반 시 위반 유형에 따라 각종 제재를 “별표1”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퇴직 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 청렴계약, 사규 등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제8조(경제적 제재) ①직책금, 성과금, 퇴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경제적 제재가 가능한 급부를 제재대상으로 한다.

②이사회는 위반유형, 재직여부 등에 따라 관련 경제적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 등에 대하여 지급유보, 지급정지, 환수 등의 제재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경영공시) 청렴계약제의 운영현황은 경영공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부칙(2007. 9. 1. 규정 제 1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상자가 이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한다.

(별표 1)

청렴의무 위반 유형에 따른 각종 제재

| 위반유형                 | 제재내용                                                                                                                                      |
|----------------------|-------------------------------------------------------------------------------------------------------------------------------------------|
|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 1. 임원 경력 확인발급 형 집행 기간 정지<br>2. 포상취소<br>3. 형량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br>4. 관련 경제적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유보, 지급취소 또는 환수<br>5. 기타 이사회가 의결하는 제재 등  |
| 금고 이상의 형 판결 시        | 1. 복리후생이용권 형 확정 시 까지 정지<br>2. 포상수여 형 확정 시 까지 정지<br>3. 파견 형 확정 시 까지 정지<br>4. 관련 경제적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유보, 지급취소 또는 환수<br>5. 기타 이사회가 의결하는 제재 등 |
| 자격상실, 자격정지 및 벌금형 확정시 | 1. 복리후생이용권 형 집행기간 정지<br>2. 포상수여 형 집행 기간 정지<br>3. 파견 형 집행 기간 정지<br>4. 관련 경제적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유보, 지급취소 또는 환수<br>5. 기타 이사회가 의결하는 제재 등        |